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79
----------	---------

발의연월일: 2020년 8월 일

발 의 자: 김현희, 송영섭, 송순효, 박성호
정정희, 이충숙, 강선영, 경기문
이종숙, 박주선, 신낙형, 윤유선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2020년 5월 19일 부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부구청장 직속의 한시기구로 운영됨에 따라 그 소관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설함
(안 제4조제2항제2호 라목)
- 나. 부칙에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유효기간을 정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56조, 제58조
 -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2
 -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 나. 협조부서: 의회사무국
- 다. 입법예고: 2020. 8. 20. ~ 2020. 8. 24.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2항제2호 라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규정에 의한 의결,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행정·재무위원회</p> <p>가. ~ 다. (생략)</p> <p><u><신설></u></p> <p>3. ~ 4. (생략)</p> <p>③ (생략)</p>	<p>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u>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u> <u>관한 사항</u></p> <p>3.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 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2(한시기구)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한시기구로 신청사건립 추진단을 둔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6. 2.26)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17)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재무위원회(개정 2002.4.6)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2.20)

나. 행정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1998.10.7, 2011. 9.27, 2014.11.5., 2018.12.28, 2019.2.20)

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1998.10.7, 2008.9.29, 2011. 9.27, 2019.2.20)

다. 삭제(개정 1998.10.7, 삭제 2018.4.25.)

라. 삭제(2008.9.29)

마. 삭제(신설 1998.10.7, 개정 2007. 2.28, 삭제 2018.4.25.)

바. 삭제(신설 2013.7.3, 삭제 2018.4.25.)

3. 미래·복지위원회(호신설 2018.4.25, 개정 2019.2.20.)

가. 미래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2.20.)

나. 생활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2.20.)

다.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2.20.)

4. 도시·교통위원회(개정 2002.4.6, 2018.4.25, 2019.2.20.)

삭제(개정 1998.10.7, 2006.11.14, 2011. 9.27, 삭제 2018.4.25.)

가.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8.4.25.)

나. 안전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3.8.7, 2014.11.5. 2018.4.25., 2018.12.28.)

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3.7.3, 2018.4.25.)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개정 1995. 7.29)

④삭제 (1995. 7.29)